

	<h1 style="margin: 0;">동아리운영 규정</h1>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1985. 9. 1.
		최종개정일자	2014. 3. 5.
		담당부서	교무입학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한다)의 건전한 동아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5>

제2조(동아리 구성) ①동아리의 구성원은 우리 대학 재학생에 한 한다.

②각 동아리는 15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동아리는 지도교수 1명 이상을 추대하여야 한다.

④동아리는 지도교수는 1인 1개 동아리에 한 한다.

제3조(등록) ①동아리 등록은 매년 1학기 초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1. 동아리등록부 <별지 제1호>
2. 지도교수 승낙서 <별지 제2호>
3. 운영 · 행사계획서 <별지 제3호>
4. 회원 명단 <별지 제4호>
5. 회원 사진 <별지 제5호>
6. 신규 동아리 신청서 <별지 제6호><개정 2014.3.5>
7. 신규 동아리 등록 규제 사항 <별지 제7호><개정 2014.3.5>

②동아리 회원은 5개 학과 15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전공 및 창업동아리는 1, 2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세부지침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3.5>

④학생 동아리 회원 명단에 등록되지 않은 학생은 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⑤각 동아리 회원 명단에 등록되지 않은 학생은 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제4조(동아리 행사허가) ①동아리 행사는 행사 5일 이전에 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아 입학 학생처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3.5>

②모든 행사에 필요한 공고물(포스터, 현수막) 및 기타 유인물을 공고, 제작 배부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교무입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동아리 행사에 강의실이나 체육관 등 시설물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타 대학 또는 타 기관과의 연합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전에 교무입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등록취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등록을 취소한다.<신설 2014.3.5>

①회칙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때

②활동실적이 없을 때 다만, 신규 등록 동아리는 예외로 한다.

제6조(동아리활동 준수사항) ①학내외의 모든 행사는 시종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사를 할 때에는 학칙에 의하여 처

리 한다.<개정 2014.3.5>

③ 동아리활동에 있어 다음 사항을 금한다.

1. 퇴폐적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2. 승인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 공고하는 행위
3. 행사 찬조금 청탁 행위
4. 교무입학처장의 승인을 얻지 않은 외부 인사의 초청

제7조(보고) 동아리는 운영 및 활동실적을 매 학년도 2학기말까지 서면으로 작성하여 입학학생처에 보고한다.<개정 2014.3.5>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동 아 리 등 록 부

동아리명						
창립일						
활동목적 (구체적으로)						
활동범위 (구체적으로)						
대표학생	학과		학번		성명	(인)
지도교수	학과		성명	(인)		

<별지 제3호>

운영 · 행사 계획서

동아리명				
회 장				
월일	세부계획	실천내용	담당자	비고

<별지 제4호>

회 원 명 단

번호	학 과	학 번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별지 제5호>

회 원 사 진 표

학 과	학 과	학 과	학 과	학 과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학 과	학 과	학 과	학 과	학 과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학 과	학 과	학 과	학 과	학 과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학 과	학 과	학 과	학 과	학 과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별지 제6호>

신규 동아리 신청서

동아리명		활동분과		목포과학대학교		
등록인	성명	(인)	학과		학번	
목표 및 활동내용						
<p>본인은 다음 동아리의 지도교수로 추천되는데 대하여 이를 승낙하며, 건전한 동아리가 되도록 책임 지도 할 것을 확인함.</p>						
지도교수	학 과		성 명	(인)		
등 록 추 천 자(학회장)						
학 번	학 과	성 명	학 년	날 인	비 고	

신규 동아리 등록 규제사항

규 제 사 항	
1	동아리 등록 시 추천자는 5개 학회장 이상이며, 회원은 5개 학과 이상으로 한다.
2	본회의 기존 동아리 방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방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3	본회의 정기 회의나 임시회의에 무단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학내 대학발전과 홍보 및 지역사회 봉사에 기여한다.
5	본 회에서 주관한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우.
6	본 회와 동아리인의 품위를 손상 시켰다고 여긴 경우.
7	본 회의 운영상 필요한 서류제출을 안한 경우.
8	대표자 총회 및 분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및 행사에 불응, 불참한 경우.
9	동아리 방 배정 시 숙박 및 취사(전열기구사용금지)를 할 수 없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엄중히 제명으로 대처할 것을 인정하고 대표자로서 이를 인정하고 날인함.

신규 동아리명:

대표자

학 과:

성 명: (인)